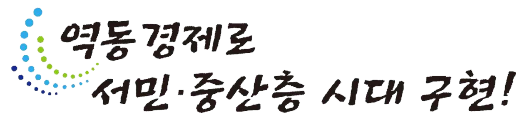


경제관계장관회의

24-18-4

(공개)



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

2024. 9. 12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추진방향	2
III. 세부 추진과제	3
1. 주거 서비스	3
2. 고령자 서비스	5
3. 모빌리티 서비스	7
VI. 향후 추진계획	12

I. 추진배경

□ 일상의 디지털화, 생활구조 변화 등으로 생활편의를 높여주는 다양한 **新서비스**가 증가하고 있으나, 소비자 만족도는 개선 미흡

- ICT기술의 일상 접목과 여가활동 확대 등 생활구조 변화로 생활편의 **新서비스**가 증가하고 있으나, 소비자 만족도는 정체*

* 소비생활 만족도(%) : ('19) 69.9 ('21) 67.0 ('23) 68.1

부문별 만족도('23년, %) : 서비스(71.2) < 제품(71.5) <<한국소비자원, '23.>>

- 만족도 저해 요인 중 서비스 가격(52.6%)과 품질불량(45.6%)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, 분쟁(20.1%)과 상해(11.6%) 등도 불만 요인

-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 운영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기

□ 주거, 모빌리티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**新서비스**의 체계적인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**제도개선** 중점 추진

- ① (주거) 공동주택 거주 비율*이 지속 확대되면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·하차 등에 따른 분쟁 사례**도 증가

* 공동주택 비율(%) : ('17) 75.6 ('19) 77.2 ('21) 78.3 ('23) 79.2 <<주택총조사, '24.>>

** 층간소음 민원 수(만건) : ('17) 2.3 ('19) 2.6 ('21) 4.7 ('23) 3.6 <<환경부, '24.>>

- ② (고령자) 고령인구* 증가로 노인복지주택 입주, 장례서비스 등 이용이 늘고 있으나,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법령이 미흡

* 65세 이상 비율(%) : ('17) 13.8 ('19) 14.9 ('21) 16.6 ('23) 18.2 <<장래인구추계, '23.>>

- ③ (모빌리티) 레저활동 증가로 지역간 이동을 위한 자동차 대여*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자 편의 개선 부진

* 렌터카 등록대수(만대) : ('19) 85.5 ('21) 99.7 ('23) 106.7 <<한국렌터카사업조합, '23.>>

-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규정 미비, 인프라 부족 등으로 사고 증가* 추세

*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(건) : ('17) 117 ('20) 897 ('22) 2,386 <<경찰청, '23.>>

Ⅱ. 추진방향

목표 생활편의를 높여주는 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

**추진
방향** ◇ 新서비스 발전을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마련
◇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

추진과제

주거 서비스

- ▶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시 하자점검 대행 관련 규정 마련
- ▶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하자 판정기준 신설
- ▶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현장방문 서비스 개선
- ▶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선
- ▶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내실화

고령자 서비스

- ▶ 장례용품·서비스 가격정보 공개 확대
- ▶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명확화
- ▶ 공공주택 내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기준 신설

모빌리티 서비스

① 차량대여 서비스

- ▶ 렌터카 대여 계약시 차량 정기검사 결과 고지
- ▶ 편도 렌터카 활성화를 위한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
- ▶ 중소 렌터카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운수협정 활성화
- ▶ 주요 기차역 내 렌터카 공동 영업소 시범운영

② 대중교통 서비스

- ▶ 대중교통 비접촉 결제 상용화를 위한 기술 표준화
- ▶ 친환경 차량의 고급형 택시운송업 면허기준 완화
- ▶ 공항·기차역 내 지역 인기제품의 팝업스토어 입주 편의 개선
- ▶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 제정 추진

Ⅲ. 세부 추진과제

1 주거 서비스

□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시 하자점검 대행 관련 규정 마련

- **(현황)** 시공하자를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으나,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 거부* 시 서비스 이용 곤란
 - * 현행 「주택법」상 제3자 동행 가능 여부 규정이 없어, 현장에서 임의 결정
- 사전방문 대행업체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, 전문인력 부족으로 부실 점검이 이루어지는 등 소비자 피해도 발생
- **(개선방안)** 입주예정자 본인, 친족, 제3자(대행업체) 등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*하여 현장 출입 관련 분쟁 예방
 - * 주택법령 개정안 마련('24.下, 국토부)
- 입주예정자가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점검 관련 기술자격, 점검장비 등을 조사하여 안내*
- * 연구용역을 통한 시장 현황 조사,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제도화 필요성 등 검토

【기대효과】 출입 관련 불편 없이 사전방문 대행 서비스 이용

- ▶ 전문자격 기준을 충족한 믿을 수 있는 사전점검 대행업체를 통해 누수·결로 등 중대한 기능상 하자를 입주 전에 꼼꼼히 점검·보수

□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하자 판정기준 신설

- **(현황)** 공동주택 층간소음 차단구조의 하자 판정기준이 미비해 입주자의 층간소음 관련 하자보수 청구 애로
- **(개선방안)**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 신설('24.下)
 - * 「공동주택 하자의 조사,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」(국토부 고시) 개정
- 하자의 조사 방법, 보수비 산정 기준 등 하자 진단과 보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

【기대효과】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하자의 보수 신청이 용이

- ▶ 바닥 두께, 흡음재 품질 미달 등 신속한 하자 판정 및 보수 요청 가능

□ 중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현장방문 서비스 개선

- **(현황)** 중간소음 이웃사이센터*에서 수도권 지역에 중간소음 갈등 관련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서비스 제공 중

* 중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소음측정,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(한국환경공단), 이웃사이센터에서 중재가 어려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(환경부) 조정 신청 가능

- 중간소음 측정 신청은 평일(9~18시) 전화 상담(1661-2642) 후 예약 가능하여 야간·공휴일에는 예약신청 불가

- **(개선방안)** 중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을 전국으로 확대(~'25)하고, 소음측정 온라인예약시스템 도입('24.下)

【 기대효과 】 갈등 중재 서비스 확대 및 이용편의 개선

- ▶ 단순 의견 전달을 넘어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이웃 간 갈등 중재 가능성 제고
- ▶ 공휴일·야간 등에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소음측정 신청 가능

□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선

- **(현황)** 장기수선계획* 수립 기준('16.8. 개정)이 기술변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** 주택 노후화 예방 및 관리에 한계

* 주요시설의 교체·보수를 위해 수선대상과 주기를 정하고, 매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

** 예 : 내부 도장(도료칠)의 법정 수선주기는 5년이나, 실제로는 약 8년마다 공사

- **(개선방안)** 공사사례 분석,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선('24.下, 국토부)

*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

- 화재 피난시설,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 수선향목을 추가하고, 공사항목·수선주기·공법 등을 실제 공사사례에 맞게 현실화

【 기대효과 】 장기수선충당금 낭비 없이 적기에 보수

- ▶ 최신 공법과 기술을 반영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, 전기차 충전기 등 기존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가 불가했던 시설도 적절한 유지·보수 가능

□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내실화

- **(현황)** 수립 주체*의 형식적 작성 및 검증 미흡**으로 장기수선 계획이 부실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, 공동주택 유지관리 애로

* (시공사) 최초 수립·제출 → (지자체) 사용검사·승인 → (관리주체) 인수 및 집행

** 시공사의 수량·단가 오기입, 수선을 및 수선주기 적정성 확인 미흡 등

- **(개선방안)**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·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·배포하고,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안내('24.下, 국토부)

- 지자체의 장기수선계획 검증 내실화를 위해 현행 15일(사용 검사 기간과 동일)인 검토기간 연장, 전산시스템 활용 등 검토

【 기대효과 】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로 주택 노후화 예방

- ▶ 장기수선계획 내실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지원하여 입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공동주택 필수설비(승강기, 완강기 등)를 적기 보수·관리

2 고령자 서비스

□ 장례용품·서비스 가격정보 공개 확대

- **(현황)**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장례용품·서비스에는 가격표시 의무가 없어* 소비자 보호에 한계

* 장례식장, 화장시설, 묘지 등 장사시설은 가격표시 의무를 적용하고, 'e-하늘 장사정보시스템'에 관련 정보 게시 중

- **(정책과제)** 장례 관련 용품·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 강화
 - 가격정보 공개 대상 장례서비스 업체, 가격표시 항목, 방법 등을 규정·의무화하는 '가격표시제' 도입방안 마련 추진(~'25.下, 복지부)

【 기대효과 】 장례 관련 가격정보 투명성 제고

- ▶ 기존 가격표시제의 적용을 받지 않던 사업자에게도 가격공개 의무를 부과해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부당행위 방지

□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명확화

- **(현황)**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분명하여 고령 입주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
- **(개선방안)**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종사자의 자격 안내('24.下, 복지부)
 - **(모든 종사자)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*** 제공 가능
 - * 고혈압,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상담 및 혈압·혈당 관리 등
 - **(의료인) 「응급의료법」 소정범위 내 응급처치*** 제공 가능
 - * 심폐소생술, 지혈·창상의 응급처치, 산소투여 등

【 기대효과 】 노인복지주택에서 건강관리 및 응급 서비스 제공

- ▶ 노인복지주택 시설 내에서 혈압·혈당 측정, 식단 상담 등 일상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관리 등이 필요한 입주자의 편의 증진
- ▶ 응급상황 발생 시 시설 내 의료실에서 신속한 응급처치 가능

□ 공공주택 내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기준 신설

- **(현황)** 고령자 입주시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제공 가능*하나, 설치 신청 등에 대한 절차가 미비해 실제 공급 제한**
 - *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편의시설(좌식 샤워시설, 높낮이조절 세면대 등)을 고령자에게도 제공하도록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('24.7.)
 - **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공급분(수도권 5%, 비수도권 8% 이상) 이외의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비장애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 부재
- **(개선방안)** 비장애 고령자가 공공주택 입주시 주거약자 편의시설(좌식 샤워시설 등)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기준 마련
 - * 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 개정('24.下, 국토부)

【 기대효과 】 편의시설 확충으로 고령자의 주거 만족도 제고

- ▶ 좌식 샤워시설, 좌식 싱크대,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고령 입주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여주는 시설을 갖춘 공공주택 공급 확대

3

모빌리티 서비스

① 차량대여 서비스

□ 렌터카 대여 계약시 차량 정기검사 결과 고지

- **(현황)** 렌터카 대여 시 고객에게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차량의 안전성 확인 곤란
 - * (렌터카 안전성 진단 설문조사) 이용자 중 54.6%가 안전점검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고 답변, 20.1%가 렌터카 이용 중 고장을 경험 <<한국소비자원, '21.>>
- **(개선방안)** 렌터카 계약 시 차량의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관련 지침 마련('24.下, 국토부)

【기대효과】 렌터카 계약 전 차량 안전 성능을 미리 확인

- ▶ 타이어 마모도, 브레이크 및 엔진 성능 등 차체 외관 점검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안전 성능 확인이 가능하고, 정기검사 미 실시 차량의 대여를 방지

□ 편도 렌터카 활성화를 위한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

- **(현황)** 렌터카를 영업소별로 등록·관리하고 있어 다른 영업소로 편도 대여 시 탁송 수수료(최대 20만원)를 소비자에게 부과
 - 타 영업소로 반납된 차량은 재대여가 제한되고, 15일 이내에 본래 등록된 영업소로 복귀하도록 규정*해 탁송비용 발생
 - * 15일 이내에 등록 영업소로 돌아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여 가능
- **(개선방안)** 렌터카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방안 검토('24.下~, 국토부)
 - 현행 영업소 기준의 타당성 및 지역별 렌터카 이용량 분석, 업계 의견수렴 등 추진

【기대효과】 렌터카 편도 이용 수수료 인하 유도

- ▶ 필요한 구간만큼만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는 편도 렌터카가 확대되어 철도·항공·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한 지역관광 및 출장 시 이용자 편의 제고

□ 중소 렌터카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운수협정 활성화

- **(현황)** 중소 렌터카 업체는 전국적인 영업소와 정비망이 없어 편도 및 차량정비 서비스 제공에 한계
 - * 영업소가 없는 다른 지역에 차량 반납이 불가하고, 영업소 인근에서만 차량 정비가 가능하여 타 지역에서 차량고장 시 출장 시간 및 비용이 추가 소요
- **(개선방안)** 업체간 영업소와 정비망 등을 공유하는 공동운수협정*을 활성화하여 중소 렌터카 업체의 서비스 품질 제고
 - * 「여객자동차법」에 따라 체결 가능하나, 실제 체결 사례 없음
- 공동운수협정의 내용을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, 신고된 범위 내에서 타 업체의 영업소·차고지 사용 허용

【 기대효과 】 중소 렌터카업체에서 고품질 서비스 제공

- ▶ 중소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 시에도 편도 이용과 고장 시 신속한 정비 서비스 이용 가능, 향후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동 브랜드로 확대 추진

□ 주요 기차역 내 렌터카 공동 영업소 시범운영

- **(현황)** 주요 기차역 내 공간 부족, 임대료 부담 등으로 렌터카 영업소의 기차역 입주가 어려워 철도 승객의 렌터카 이용 불편
- **(개선방안)** 관광·출장 등 차량 대여 수요가 많은 기차역에 다수 렌터카 업체가 임대료를 분담·입주하는 공동 영업소* 운영
 - * 지역 중소렌터카협동조합이 철도공사와 영업소 임대계약을 체결하고, 임대료 분담 및 영업 방식 등에 합의한 참여기업에 영업 공간 제공
 - 광명역(24.下), 여수 엑스포역(25.下)에 시범 입주 예정

【 기대효과 】 철도-렌터카 연계를 통해 지역 교통편의 개선

- ▶ 기차 하차 후 기차역사 안에서 렌터카 업체와 바로 상담·계약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렌터카 이용 가능

② 대중교통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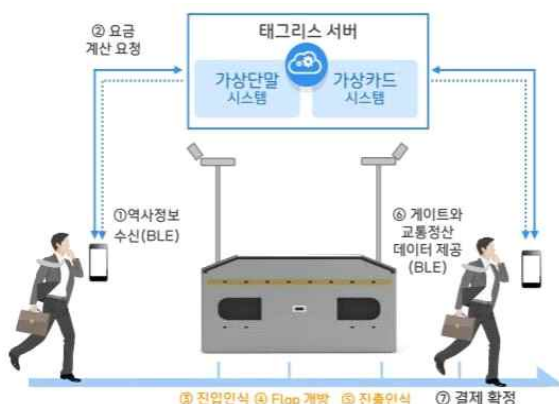
□ 대중교통 비접촉 결제 상용화를 위한 기술 표준화

- **(현황)** 운송사별 비접촉 결제 기술*이 상이해 상호 결제·환승 불가
 - * 카드 등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무선통신으로 사용자를 인식·결제, (티머니) 서울 우이신설경전철 등 / (이즐) 경기 프리미엄버스 등 시범운영 중
- **(개선방안)** 대중교통 비접촉 결제기술 전국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비접촉 결제기술 표준안 마련
 -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·운영*(‘24.下~)하여 업체 간 호환성 강화, 인식을 개선 등 기술 고도화 논의
 - * (정부) 국토부, 지자체 / (민간) 운송사업자, 정산사업자, 결제 시스템 개발사 등

【 기대효과 】 비접촉 결제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 이용

- ▶ 교통카드처럼 모든 운송사의 단말기에서 비접촉 결제와 환승 가능, 향후 버스·지하철 뿐 아니라 GTX, 개인형 이동장치 등 여러 교통수단으로 확대 추진
- ▶ 흔들리는 차 안에서 장애인·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현금 또는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어 안전사고 예방 가능

비접촉(태그리스) 결제방식 체계도



비접촉식 결제 게이트(우이신설경전철)



* 출처 : 「Tagless 결제 추진 현황 및 전략」 (티머니, '24.)

□ 친환경 차량의 고급형 택시운송업 면허기준 완화

- **(현황)**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,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이 적어 택시면허 취득 불가

* 고급 택시 면허기준 : 배기량 2,400cc 이상

시중 대형 하이브리드차량 배기량 : (H社) 1,600cc, (K社) 1,600cc

- **(개선방안)**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 없이 차량크기 기준(축간거리 2.895m 이상) 충족시 고급 택시면허 취득 허용

* 「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」(국토부 고시) 개정('24.下)

【 기대효과 】 대형 승합택시 증가로 편리하게 택시 이용

- ▶ '26년까지 대형 승합 택시 200여대(現 약 2,200대) 신규 진입 예상, 현재 최대 10분 이상 소요되는 배차시간을 단축

□ 공항·기차역 내 지역 인기제품의 팝업스토어 입주 편의 개선

- **(현황)** 공항·기차역에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최신 인기제품 임시 판매매장(팝업 스토어)을 신속하게 유치·설치하는데 애로

* 국가계약법상 추정 계약가격이 총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경쟁입찰 원칙으로 입찰과정이 3개월 이상 소요

- **(개선방안)** 공항·기차역 내 중기·소상공인의 팝업스토어 임대 시 수익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계약특례 부여*

* 계약의 공정성 및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

【 기대효과 】 기차역·공항에 최신 유행하는 팝업스토어를 빠르게 설치

- ▶ 지역에서 유명한 특산물, 음식, 기념품 등 최신 유행하는 상품을 기차역과 공항에서도 손쉽게 구매

□ 개인형 이동장치(PM)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 제정 추진

* Personal Mobility : 전동 킥보드 등 전기로 움직이는 저속·소형 1인 운송수단

- **(현황)** 자동차 중심의 「도로교통법」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, PM에 적합한 안전관리* 및 산업발전 지원이 미흡

* 예 : 아파트 단지, 대학 캠퍼스 등 「도로교통법」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역에서 PM 이용이 많고, 주정차 방식이 자동차와 상이하여 별도의 규정 필요

- **(개선방안)** 「(가칭)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」 제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* 구성·운영('24.下~)

* (정부) 국토부(총괄), 기재부, 경찰청, 지자체 / (민간) 공유 PM업체 등

- 속도제한 강화(25→20km/h) 등 PM 안전 규정 및 전용 주차장·자전거 도로 등 관련 인프라 확충방안 마련

* (안전규정) 속도제한 강화, PM 대여시 면허 확인 의무,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 (인프라 확충) 전용 주차장 설치 지원, 자전거 도로 확대, 불법주차 단속기준 확립 등

【 기대효과 】 모두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PM 사용 환경 조성

- ▶ 무면허 운전, 과속, 불법주차 등 보행자 교통안전 위협 요인은 줄이면서 라스트마일(Last Mile) 교통수단으로서 PM을 편리하게 활용

주요 국가별 PM 관련 규제 현황

구분	대한민국	영국	독일	프랑스	싱가포르	일본	미국 (캘리포니아)
제한속도	25km/h	25km/h	20km/h	25km/h	25km/h	20km/h	24km/h
운전면허 의무 여부	○	○	X	X	전용교육 이수 필요	X	○
자전거 도로 통행 여부	○	X (차도 이용)	○	○	○	○	○
인도 통행 가능 여부	X	X	X	X	X	△ (6km/h 이하)	X
보험가입 의무 여부	선택	필수	필수	필수	필수	필수	필수

* 출처 : 「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」(도로교통공단, '24.)

VI. 향후 추진계획

정 책 과 제	추진 시기	담당 부처
1. 주거 서비스		
▶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시 하자점검 대행 관련 규정 마련	'24.下	국토부
▶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하자 판정기준 신설	'24.下	국토부
▶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현장방문 서비스 개선	'24.下~	환경부
▶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선	'24.下	국토부
▶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내실화	'24.下	국토부
2. 고령자 서비스		
▶ 장례용품·서비스 가격정보 공개 확대	'25.下	복지부
▶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명확화	'24.下	복지부
▶ 공공주택 내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기준 신설	'24.下	국토부
3. 모빌리티 서비스		
▶ 렌터카 대여 계약시 차량 정기검사 결과 고지	'24.下	국토부
▶ 편도 렌터카 활성화를 위한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	'24.下~	국토부
▶ 중소 렌터카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운수협정 활성화	'24.下~	국토부
▶ 주요 기차역 내 렌터카 공동 영업소 시범운영	'24.下~	국토부
▶ 대중교통 비접촉 결제 상용화를 위한 기술 표준화	'24.下~	국토부
▶ 친환경 차량의 고급형 택시운송업 면허기준 완화	'24.下	국토부
▶ 공항·기차역 내 지역 인기제품의 팝업스토어 입주 편의 개선	'24.下	기재부
▶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 제정 추진	'24.下~	국토부